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2. .

국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2월 17일, 홍기원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2월 18일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2025.2.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5.2.1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
영폐기)

제3차 국방위원회(2025.2.20.)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홍기원 의원)

최근 군인의 복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임용권자가 군인 휴직자에 대

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도록 「군인사법」이 개정되었음.

그런데 군인과 함께 일선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무원의 경우 그 규모 및 역할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휴직자 발생 시 대체인력 확보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군인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용권자에게 휴직으로 인하여 군무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군무원이 안정적으로 일·가정 생활을 병행하며 복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최근 「군인사법」 개정('24.12.3. 법률 제20538호)을 통해 군인에 대해서는 “임용권자가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된 바 있으므로, 군무원의 자유로운 휴직 여건을 조성하고 일·가정 생활의 병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군인의 경우 국토방위태세의 유지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결원 보충의 시급성이 강하게 요구되나, 군무원의 주된 임무는 기술·연구·예비 전력관리 또는 행정관리 분야로 결원 보충이 동일한 수준의 시급성을 가

지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관련해서, 행정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국가공무원 역시 「국가공무원법」에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는 규정만 마련되어 있으며, 임용권자의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 의무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지는 않은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부승찬)

개정안의 내용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되, 다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